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 가중처벌〉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91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가. 목적범의 개요	5
나. 이상동기범죄의 개요	7
다. 이상동기범죄 관련 해외 사례 및 그간의 논의	8
라. 검토의견	10
마. 관계기관 의견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6. 17.
3. 회 부 일: 2025.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누구나 예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합니다.

현행법은 묻지마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살인이나 상해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할 뿐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무관계성, 행위의 비전형성, 동기의 이상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사후적 분석에 그치며 실질적인 예방이나 억제를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에 의해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14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입법취지

개정안은 불특정 대상에 대하여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살인·상해·상해치사·폭행·폭행치사상 등의 죄(직계존속 대상범죄는 제외)를 범할 경우 각 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14(이상동기에 의한 살인·폭행 등의 가중 처벌) 연관관계 없는 불특정 대상에 대하여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의 죄 2.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제3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62조의 죄

개정안은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불특정 대상

에 대하여 이른바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를 범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 「형법」¹⁾상 범죄와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

구분	형 법	개정안
살인 (제250조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 및 폭행치상 (제257조①, 제262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4년 이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미수 (제257조③)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임의적 감경	14년 이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임의적 감경

1)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5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5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구분	형 법	개정안
중상해죄 (제258조①·②)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특수상해 (제258조의2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 (제259조①, 제262조)	3년 이상 유기징역	6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 (제260조①)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4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목적범의 개요

목적범은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로서, 목적으로 인해 ‘기존의 위험성이 증대되거나 특수한 위험성이 발현되는 범죄유형’임.²⁾ 목적의 체계상 지위에 대해 학계에서는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또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봄. 목적범의 경우 목적을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일반 고의범의 경우에 비해 목적범의 범죄성립요건을 더 강화하게 되는바,³⁾ 주관적 구성요건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범죄 성립의 확장을 방지하거나 엄격히 해석하는 효과가 있음.⁴⁾

2) 정영일, 목적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9, 2001, 237쪽(손지선, 목적범에 관한 고찰 -‘불완전한 이 행위범과 단축된 결과범’ 분류기준의 재고, 형사법연구 제30권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114쪽에서 재인용)

3) 김성돈, 앞의 책, 342쪽

4) 이형국·김혜경, 형법총론, 제8판, 97쪽

목적과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자가 가지는 내부적
· 심리적 측면을 가리키는 점에서 공통되나, 고의는 구성요건의 객
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목적은 객
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초과하는 사실을 의욕한다는 점에서 다름.

목적과 동기는 동일한 심리적 사실에 속하므로 목적도 넓은 의미
에서 보면 범죄의 동기에 속하나, 입법자가 동기 중에서 범죄 형태
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 중
요한 행위반가치적 요소를 목적범의 구성요건인 목적으로 설정하게
됨.⁵⁾ 동기는 범죄구성요건과 무관한 비유형적 관념이며, 행위자의
비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평가⁶⁾에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이
지만, 목적은 일정한 외부적 행위와 관련성을 가진 유형적 관념으로
구성요건요소이며 불법평가의 기초가 됨.⁷⁾

나. 이상동기범죄의 개요

이른바 이상동기범죄는 치정이나 원한관계 등을 이유로 특정 상
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우순경 총기난사
사건⁸⁾, 여의도 흉기난동사건⁹⁾, 강남역 살인사건¹⁰⁾, 서울 강서구 PC

5) 강우애, 대법원 양형기준의 동기요소에 대한 분석, 홍익법학 제15권제3호, 329-330쪽

6)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7) 김성돈, 형법총론 제9판, 342쪽

8) 1982년 4월, 우범곤 순경이 경남 의령의 한 시골마을로 전출한 뒤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 부모를 포함하여 마을주민 90명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 6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임.

방 살인사건¹¹⁾ 등 평소 가지고 있던 사회나 현실에 대한 증오심 또는 적개심 등을 바탕으로 불특정인 대상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종래 범죄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¹²⁾로 불리우던 것을 2023년부터 경찰청에서 ① 피해자 무관련성 ② 행위의 비전형성 ③ 동기의 이상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상동기범죄”로 개념화하였음.¹³⁾¹⁴⁾

9) 2012년 8월, 여의도 거리에서 31세 남성 A씨가 33세의 전 직장상사와 32세의 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나다 행인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4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임.
 10) 2016년 5월, 서초동에 위치한 노래방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임.
 11) 2018년 4월,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손님 A씨가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B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임.
 12)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III, 2015년, 11쪽

<대검찰청의 ‘묻지마 범죄’ 대상 범죄>

구분	구체적인 내용
‘묻지마 범죄’의 정의	범죄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및 제254조(제250조 살인죄의 미수범에 한함) 2.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제284조(특수협박) 4. 「형법」 제2편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제2항(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등 치상, 치사), 제172조제2항(폭발성 물건파열 등 치상, 치사), 제172조의2제2항(가스·전기등 방류등 치상, 치사) 5.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8조(중손괴), 제369조(특수손괴)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죄명 예시	· 살인, 살인미수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 협박, 특수협박 ·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협박, 재물손괴등, 상해])

13) 박소현,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 - 개념재정립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제2347호, 국회 입법조사처, 2025. 4. 16., 2쪽

14) <이상동기범죄 판단기준>



* 자료: 김재영,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경찰청 대응 현황과 예방책,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 2025. 3. 24., 75쪽(박소현, 앞의 글, 2쪽에서 재인용)

“이상동기범죄”는 연간 4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¹⁵⁾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누구도 범죄 피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문제가 있음.

다. 이상동기범죄 관련 해외 사례 및 그간의 논의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곳에서, 확실한 동기 없이, 지나가는 불특정한 사람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여 살상 등의 해를 가하는 사건’을 ‘거리의 악마 살인사건’[通り魔殺人事件(토오리마 사건)]으로 개념화하여 이러한 특성에 맞는 범죄들을 포착하여 통계로 집계·관리하고,¹⁶⁾ 범죄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음.¹⁷⁾ 일본에서는 거리악마 살인사건의 주요 원인이 주로 사회부적응(은둔형 외톨이)에 있다고 판단한 후, 사회부적응자들의 사회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하여 극단적 폭력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였음.¹⁸⁾

15)

<최근 2년간 이상동기범죄 사건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88	18	9	5	3	3	3	-	13	9	4	4	3	1	3	1	4	5
'23년	46	12	4	1	2	1	1	-	8	7	1	2	1	-	-	1	3	2
'24년	42	6	5	4	1	2	2	-	5	2	3	2	2	1	3	-	1	3

* 자료: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과,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5. 3. 17.(박소현, 앞의 글, 2쪽에서 재인용)

16) 일본 경찰청이 발표하는 「범죄정세」에 따르면, ‘거리의 악마 살인사건’의 인지 사건 수는 2008년의 14건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9건 이하로 발생하였으며,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연내에 검거되었음.(박소현, 앞의 글, 3쪽)

17) 박소현, 앞의 글, 3쪽

18) 박형민,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0권, 2013, 232쪽.(박소현, 앞의 글, 3쪽에서 재인용)

독일에서는 ‘맹목적 분노 공격’(Amoklauf)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수사 실무상에서도 사용되고 있음.¹⁹⁾ ‘맹목적 분노 공격’범죄라 보도된 2009년 바덴뷔템베르크주 비넨덴 지역에서의 학교 총기 난사사건에서 주정부는 정치인, 학자, 청소년 보호 전문가, 경찰, 소방대원, 청소년 복지 사무소,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위험요인 식별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개입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음.²⁰⁾

미국에서는 ‘증오범죄’로 개념화하여 ‘증오범죄통계법’(The Hate Crime Statistics Act, 1990)에서 ‘인종, 성별과 성적 정체성, 종교, 장애, 성적 지향성, 민족 등에 바탕을 둔 편견에서 기인한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주된 동기로 작용한 범죄’ 정의하고,²¹⁾ 증오범죄를 ‘증오범죄 형량선고 강화법’(The Hate Crime Sentencing Enhancement Act, 1994)을 통해 양형 시 형량 가중이 가능하도록 함²²⁾과 동시에, ‘증오범죄 예

19) 「독일 경찰직무규칙 100」[Polizeidienstvorschrift(PDV) 100] 제4.11a.1.1조에 따르면, ① 외견상 대상자 선택이 무작위적이든, 표적을 삼아서든 ② 특히 무기, 폭발물, 위험한 물건을 수단으로 또는 비정상적 물리력을 사용하여, ③ 통상 불특정 다수를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며, ④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경찰전술적 의미에서 ‘맹목적 분노 공격’이라고 함.(박소현, 앞의 글, 4쪽에서 재인용)

20) 박소현, 앞의 글, 4쪽

21) 박지선·최낙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외국 사례 및 대처방안연구, 대검찰청, 2013, 6쪽

22) 미국연방법전 제28편 제994조(연방양형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연방양형위원회로 하여금 증오범죄에 대해 최소 3단계 이상의 형량 가중을 규정하는 지침을 공포하거나 기존 지침을 개정하도록 함.

SEC. 280003. [28 U.S.C. 994 note] DIRECTION TO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REGARDING SENTENCING ENHANCEMENTS FOR HATE CRIMES.

(a) DEFINITION.- In this section, “hate crime” means a crime in which the defendant intentionally selects a victim, or in the case of a property crime, the property that is the object of the crime, be cause of the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ethnicity, gender, gender identity, disability, or sexual orientation of any person.

(b) SENTENCING ENHANCEMENT. - Pursuant to section 994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shall promulgate guidelines or amend existing guidelines to provide sentencing enhancements of not less than 3 offense levels for offenses that the finder of fact at trial determines beyond a reasonable doubt are hate crimes. In carrying out this section,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shall ensure that there is

방법’(The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2009)등을 통해 증오범죄 관리와 처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오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음.²³⁾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상동기범죄’, ‘무차별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²⁴⁾

라. 검토의견

살인이나 폭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특정 대상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이상동기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이상동기범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고의’ 및 ‘동기’와

reasonable consistency with other guidelines, avoid duplicative punishments for substantially the same offense, and take into account any mitigating circumstances that might justify exceptions.

23) 박지선·최낙범, 앞의 글, 167쪽

24) i)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이상동기로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834,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ii)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무차별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7,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4, 조정태의원 대표발의)

구별되는 목적범의 초과 주관적 요소인 ‘목적’으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합리적 양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동기범죄’를 목적범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 및 ‘동기’와 구별되는 일정한 외부적 행위와 관련성을 가진 유형적 관념으로서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불법요소’인 ‘목적’이 필요함.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²⁵⁾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등과 같이 “욕구를 충족할 목적”과 유사한 구성요건을 목적범²⁶⁾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기는 하나,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은 ‘살인 또는 폭력’이라는 외부적 행위와 관련성을 가진 관념으로서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불법요소’라기 보다는 ‘살인 또는 폭력’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의와 구별이 어려운 점에서, 이를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요소인 ‘목적’으로 규정하여 불법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기를 가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양형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점에서,²⁷⁾ 「특정범죄 가중처벌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등에 관한 법률」에 가중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대신, 개별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합리적 양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살인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구의 발로·충족”으로 1명을 살해한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여 각각 양형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음.²⁷⁾

둘째, 개정안에 따른 가중처벌 구성요건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

27)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28)

<살인범죄 양형기준>

(자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①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②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③ 금전·불륜·조직이익 목적 살인, ④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등이 해당함.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②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등이 해당함.

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개정안이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관관계 없는 불특정 대상” 및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의 의미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대상과의 연관 정도 및 범죄 목적에 대한 입증과 판단이 쉽지 않아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존속살해죄 등 반윤리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정책적 결정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형벌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²⁹⁾

개정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경우 「형법」상 존속살해죄나 존속중상해죄 등 존속에 대한 반윤리적 범죄보다도 가중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가중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넷째, 정신질환, 약물남용,³⁰⁾ 외국인에 대한 분노³¹⁾, 빈부격차·

29)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00 결정례

30) 대검찰청(2013)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묻지마 범죄 사건 총 55건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를 분석

고용불안·실직 등 ‘이상동기범죄’의 범행동기 특성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을 통한 위하(威嚇)만으로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운 점에서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 사회적 소외자 및 저소득층·실직자에 대한 지원, 정신 장애자 및 우범자 등 고위험군 관리,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뢰 형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재범 방지 및 치료를 통한 예방 등³²⁾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개정안은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이상동기범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는 인정되나,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고의’와 구별되는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가중처벌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존속살해죄 등 반윤리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게 되는바 가중처벌의 정도에 대해서 책임주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 결과,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44%)으로 인한 범행이 가장 많았으며,이 외에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약물남용(31%)도 다수 나타났음.(박지선·최낙범, 앞의 글, 182쪽)

31) 2012년에 발생한 의정부역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범죄자가 평소에 중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들 때문에 자신의 일감이 줄었다고 적개심을 품었고, 이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려고 소지하고 다니던 공업용 커터칼을 범행에 사용하였음.(박지선·최낙범, 앞의 글, 184쪽)

32)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III, 2015년, 156-167쪽 참조

마. 관계기관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연관관계 없는 불특정 대상’이라는 요건과,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이라는 요건은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맞지 않고, 각 요건은 향후 적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으로는 해당 범죄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6